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2. 12. 7.(수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

(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소관)

의회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설치근거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8조의7

○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○ 금천구 운용되는 기금은 총 13개[1]를 관리하고 있으며
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를 담당하고 있음

○ 기금 조성 규모는

2023년도 총 조성규모는 48,661,635천원이며

- 2023년도말 조성액 : 37,707,931천원

- 융자금 미회수채권 : 10,953,704천원

1) 법정의무6(자활, 양성평등, 통합재정안정화, 재난관리, 옥외광고발전, 식품진흥), 법정재량6(노인복지,도로굴착, 중소기업육성, 남북교류협력,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,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), 구 자체1(청년미래)

5.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

가.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개별기금별 운용계획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ⓐ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3년도말 조성액 ⓓ=ⓐ+ⓑ-ⓒ	증 감 ⓔ=ⓓ-ⓐ
		수입ⓑ	지출ⓒ		
합 계	**5,960,942**	**2,030,743**	**2,045,307**	**5,946,378**	△14,564
자 활 기 금	1,000,130	235,500	201,200	1,034,430	34,300
노 인 복 지 기 금	351,979	7,812	11,780	348,011	△3,968
양 성 평 등 기 금	461,821	9,000	40,560	430,261	△31,560
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	513,547	22,000	80,000	455,547	△58,000
재활용품판매대 금 관 리 기 금	306,519	36,000	17,000	325,519	19,000
옥외광고발전기금	1,152,212	159,000	290,560	1,020,652	△131,560
도로굴착복구기금	2,174,734	1,561,431	1,404,207	2,331,958	157,224

6.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ⓐ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ⓔ=ⓓ+ⓐ	비고
		수입ⓑ	지출ⓒ	증 감 ⓓ=ⓑ-ⓒ		
자 활 기 금	1,000,130	235,500	201,200	34,300	1,034,430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235,500	111,126	124,374
자활근로사업수익	200,000	100,000	100,000
공공예금 이자	30,000	5,500	24,500
융자금회수이자	5,500	5,626	△126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201,200	182,000	19,200
사회복지사업보조	81,200	62,000	19,200
융자금	120,000	120,000	0

7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7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임.

○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

자활근로사업수익 2억원, 공금예금이자수입 3,000만원

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50만원

총 2억 3,550만원이며,

지출내역

자활사업 보조비 8,120만원

자활사업 민간 융자금 1억 2천만원

총 2억 120만원입니다.

○ 2023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교육, 자활기관 기능보강비와 자활기업 및 수급자 자활조성사업자금 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,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▢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▢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·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·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07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 · 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 2. 1.]
[제18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<2021. 7. 27.>]

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'구' 라 한다)의 교부금 및 출연금
2. 국고보조금
3.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
4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5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
6.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7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"수급자"라 한다)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
7.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 나.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9. 자활사업 연구?개발?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11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
12.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